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3.

발 의 자 : 우진석 의원 외22명

1. 제안 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리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
3.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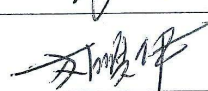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u> <u><신설></u>	<u>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u> <u>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 <u>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u> <u>2.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u> <u>3.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

의원명	서명	날인
유지석		
이강산		
구라재		
정호수		
박승이		
김도문		
유서강		
박세채		
이교상		
이현우		
김원봉		
김영호		
전인철		
함경환		
김상준		
김민준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살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

[illegible]